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776호 2023. 9. 6.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9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95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0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-1894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 개정 조례안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9월 6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,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에 따라 통·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(안 제5조, 제7조 및 제8조)
- 나. 통장 해임 시 통장 실비 지급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16조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4516, 팩스 032-560-2710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,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에 따라 통·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(안 제5조,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실, 가정보육과 합의
- 라. 기 타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23-1894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통·반장 위촉)”을 “(통·반장의 임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통·반장의 임명 등)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둘 수 있되, 통·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통·반장의 임기)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·반 조정으로 재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제7조(통·반장 위촉)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③ 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원 또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 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,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⑤ 통장 후보자가 1개 통에 2명 이</p>	<p>제7조(통·반장의 임명 등)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둘 수 있되, 통·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위촉심사
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, 위원회 구
성·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제8조(통·반장 해촉 및 재·위촉 제한)

<삭 제>

①동장은 통·반장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
할 수 있다.

1. 사고,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
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
는 경우

2.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
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
한 경우

3. 해당 통·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하
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
한 경우

4. 통·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
유가 있는 경우

5.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
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
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
수행한 경우

6.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
남용하였을 경우

7.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
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
경우

8. 민·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촉된 통·반장은 우리구에서 3년간,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3년간 다시 위촉할 수 없다.

제16조(실비지급 등)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제16조(실비지급 등) ①-----

다만,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		
2.	성명(단체명/대표자)	
	주 소	
3. 의견		
4. 기타		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- | | |
|--------|--|
| 비
고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-----|--|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-1895호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

일부 개정 규칙안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9월 6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자치법규명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, 임기에 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, 통·반장의 임명, 통·반장의 해임, 통·반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비(안 제4조, 제4조의2 및 제4조의3)
- 나. 통장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의3)
 - (현행) 임기 2년, 연임 3회 → (개정) 임기 3년, 연임 2회
- 다. 통장 임면 관련 용어 정비(위촉·해촉 → 임명·해임) 및 별지 서식 정비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2-560-4516, 팩스 032-560-2710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통·반장의 위촉 및 해촉, 임기에 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, 통·반장의 임명, 통·반장의 해임, 통·반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정비(안 제4조, 제4조의2 및 제4조의3)
- 나. 통장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개정(안 제4조의3)
 - (현행) 임기2년, 연임 3회 → (개정) 임기 3년, 연임 2회
- 다. 통장 임면 관련 용어 정비(위촉·해촉 → 임명·해임) 및 별지 서식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감사실, 가정보육과 합의
- 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통장의 연임제한)”을 “(통·반장의 임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.
- 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원 또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.
- ③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 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.
- ⑤ 해당 통에 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, 위원회 구성·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통·반장의 해임) ① 동장은 통·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
- 1. 사고,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2.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

3. 해당 통·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
4. 통·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5.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
6.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
7.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
8. 민·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
9. 통·반장이 스스로 그 직의 해임을 희망한 경우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임된 통·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,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다.

제4조의3 (통·반장의 임기 등)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의 총 재임기간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연임 후 2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임통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통에 한정하여 현임통장(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임통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통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통장을 포함한다.)을 재임명할 수 있다.

④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·반 조정으로 재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이때, 재임명된 통장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”을 “임명”으로, “명시한 공고문을 15일 이상 공고하여”를 “명시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위촉절차”를 “임명절차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조례 제7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)”을 “(통장임명심사위원회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통장위촉심사위원회”를 “제4조제5항에 따라 통장임명심사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촉장을 교부하며, 위촉장”을 “임명장을 교부하며, 임명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심사 결과 통보 및 위촉순위)”를 “(심사 결과 통보 및 임명순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장위촉심사결과서”를 “통장임명심사결과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위촉”을 “임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위촉”을 “임명”으로, “위촉할”을 “임명할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통장 위촉)”을 “(통장 임명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7조제4항에 따른 재위촉”을 “제4조제4항에 따른 재임명”으로, “제4조제1항에 따른 재위촉”을 “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재임명”으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임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촉은”을 “임명은”으로, “위촉대상자”를 “임명대상자”로, “위촉장”을 “임명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촉사항”을 “임명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촉하였을”를 “임명하였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다음날”을 “전날 또는 다음날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임명된 통·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2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2회 미만 연임한 통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동 공 고 제 호

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

1. 후보자 등록대상 : 통장

2. 후보자 등록 신청

가. 신청서 교부(접수)기간 : 년 월 일 ~ 월 일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
나. 신청장소·방법 :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(대리나 우편은 불가)

다. 자 격

-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
-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
-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

라. 제 출 서 류

-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(별지 제2호서식-동 주민센터 비치)
-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
 - 봉사활동 :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
 -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(언론보도, 구보 등)
- ③ 해당 통 지역주민(세대주)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(별지 제13호 서식- 동 주민센터 비치)

마. 임명절차 및 방법

- ① 「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동장이 임명
-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
바. 임 기 :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(총 9년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)718-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.

위 축 장

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

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 임명
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위촉기간 : 년 월 일 ~ 월 일

 년 월 일

인천광역시 서구 동장

통장임명심사결과서

안건	동 통장임명에 따른 후보자 심사		
심의내용	통장후보자 중 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통장 후보자 순위를 결정함		
순위	성명	평점	비고
1			
2			
3			
4			
5			

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
 위원장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 위원 (인)

동장 귀하

서 약 서

본인은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 회의에서
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
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동 통장임명심사위원

(서명)

동장 귀하

임명장

인천광역시 서구 동로

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제 통장으로
임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서구 동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통장의 연임제한)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은 관할 행정동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. 총 재임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3회 연임 후 2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임통장을 위촉하기 어려운 통에 한해서는 현임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 변경 및 통·반 조정으로 재위촉된 통장은 재임기간 산정 시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통·반장의 임명 등)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원 또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 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.</p> <p>⑤ 해당 통에 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, 위원회 구성·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

<신 설>

- 제4조의2(통·반장의 해임) ① 동장은 통·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1. 사고,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2.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
 3. 해당 통·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
 4. 통·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 5.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
 6.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
 7.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
 8. 민·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
 9. 통·반장이 스스로 그 직의 해임을 희망한 경우

<신 설>

②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임된 통·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,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다.

제4조의3 (통·반장의 임기 등)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의 총 재임기간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연임 후 2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입통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통에 한정하여 현임통장(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입통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통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통장을 포함한다.)을 재임명할 수 있다.

④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·반 조정으로 재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이때, 재

제5조(통장후보자 신청 공고) ① 동장은 통장을 위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고문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통장후보자(이하 “후보자”라 한다)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통장 지원 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
- 4. ~ 6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
제7조(후보자 등록 제한) 동장은 후보자 중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)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통장위촉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· ③ (생략)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,

임명된 통장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.

제5조(통장후보자 신청 공고) ① ---
 ----- 임명-----
 ----- 명
시하여 -----

 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 임명절차-----
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후보자 등록 제한) -----

 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4조제1항-----

제8조(통장임명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-- 제4조제5항에 따라 통장임명심사위원회-----
 -----.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
 ----- 임명장을 교부하며,

위촉장에는 활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.

임명장-----
----.

제10조(심사 결과 통보 및 위촉순위)

제10조(심사 결과 통보 및 임명순위)

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위촉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① -----
----- 통장임명심사결과서-----
-----.

② 동장은 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제1순위 후보자를 통장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순위 후보자를 위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순위 후보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-----
----- 임명-----.
----- 임명-----
----- 임명할 -----
-----.

제12조(통장 위촉)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후보자 또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재위촉 대상이 되는 통장,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위촉 대상이 되는 통장을 위촉한다.

제12조(통장 임명 절차 등) ① -----

② 통장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 위촉대상자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----- 제4
----- 조제4항에 따른 재임명 -----
-----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재임명 ----- 임명한다.

③ 동장은 통장 위촉사항을 동 홈페이지 또는 동 게시판에 게시한다.

② -- 임명은 -----
-- 임명대상자 -----
----- 임명장-----
-.

④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·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③ ----- 임명사항-----
-----.

④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·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④ ----- 임명하
였을-----

-----.

제15조(반상회 운영)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, 정기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개최하며 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개최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5조(반상회 운영) ① -----

 ----- 전날 또는 다음날-.
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